

2019년 제41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 일 시 : 2019년 6월 26일(수) 15시 30분

◆ 장 소 : 청계별관 4층 회의실

◆ 참 석

- 심의위원(9) : 최만범 부위원장, 김재형 위원, 한화진 위원,
김성욱 위원, 서혜정 위원, 박은수 위원,
김선순 위원, 이회승 위원, 문홍선 위원
- 배 석 : (간사)서남권사업과장,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

◆ 안건 및 결과

- 심의안건 I

- 1) 연구시설면적비율 하향 사업계획 변경 심의 : **승인의결**
- 2)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 ① 입주·분양계약 포기 시 차순위자 선정 규정 신설 : **수정의결**
 - ②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 산정 규정 신설 : **원안가결**
- 3) 마곡광장 사용신청 우선순위 중복 시 의견청취 방법 : **2안으로 의결**

- 심의안건 II

- 1) 마곡 R&D센터 건립 「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안) 」 심의 : **원안가결**

- 보고안건 : **보고완료**

- 1) 제18차 일반분양 입주계약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 2) 서울식물원 서측 지원시설 명소화를 위한 용지변경 추진
- 3) 마곡 MICE 복합단지 조성 사업자 제공모 계획
- 4) 2019 M-밸리 포럼 개최 결과

제41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마이크 미사용 및 녹취불능은...포시함.)

개 회 2019년 6월 26일(수) 15시30분

장 소 청계별관 4층 회의실

부위원장

이게 원래는 회의가 시작되려면, 열네 분 중에서 여덟 분이 참석을 하셔야 보고안건도 사실은 받는 게 순서가 되는 건데, 두 분이 안 오시기 때문에, 두 분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위원이 여섯 분이 참석을 하신 거거든요.

사전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참석하시는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데, 간당간당하게 여덟 분이시니까 한 분만이라도 빠지면 이게,

간 사

오시기로 했던 000, 다른 분이군요.

000 위원님이 갑자기 못 오신다고 하니까요.

부위원장

보고안건도 사실은 회의가 성사가, 성원이 된 다음에 보고를 들어야 이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성사가 안 됐기 때문에, 성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두 분이 오시는 것을 가정을 하고 약식으로 먼저 보고를 하신 다음에, 두 분이 다 들으시고 나서 보고가 됐다는 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사께서는 먼저 그럼 보고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보고안건

제18차 일반분양 입주계약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제1호 보고안건설명

간 사

죄송합니다.

23페이지 보고안건을 시간관계상 먼저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5월 10일 날 정책심의회에서 통과한 안건인데요.
일반분양 입주계약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OOOOO가 선정이 됐었는데, 입주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입주계약 했었는데 계약을 철회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은 체결되지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뒤페이지 24페이지 보시면, 지금까지 이런 케이스가 한 아홉 번 정도 있었습니다.
어렵게 입주해 놓고, 입주계약을 해놓고 실제로는 분양계약을 이루지 못하고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차순위 심의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심의안건에, 7페이지 안건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그 분양공고를 낼 때, 입주계약자가 입주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내에 분양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보통 해제를, 철회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일주일 내에 그렇게 생기면 차순위자, 그러니까 기본점수가 된 상태에서 차점자한테 별도의 공고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앞으로 다음에 앞부분에 심의안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 보고안건

서울식물원 서측 지원시설 명소화를 위한 용지변경 추진

제2호 보고안건설명

간 사

두 번째 26페이지 서울식물원 서측 명소화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소화 사업 진행중인 관계로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제3호 보고안건

마곡MICE복합단지 조성 사업자 제공모 계획

제3호 보고안건설명

간 사

그다음 보고안건은 세 번째, MICE복합단지 사업자 제공모 계획입니다.

<MICE 복합단지 사업자 제공모 계획 진행중인 관계로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제4호 보고안건

2019 「M-밸리 포럼」 개최 결과

제4호 보고안건설명

그다음에 네 번째 보고안건은 33페이지, 5월 달에 M-밸리 포럼을 발주
하고 처음 열었습니다.

FITI 시험연구원 2층에서 했고, 초청강연은 김태유 서울대 교수, 그리
고 패널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 10월 달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올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 중에 해외 석학,
R&D 쪽이나 연구 쪽에 석학들이 방문 일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
희들이 일정 잡는데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안건에 대해서 혹시,

보고안건심의

부위원장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하셔서요.

OOO 위원

<MICE 관련 질문>

간 사

<MICE 관련 답변>

OOO 위원

첫 번째 보고안건 OOOOO 입주 포기한 거죠?

간 사

예.

OOO 위원

입주 포기한다는 그거를,

간 사

사유가,

OOO 위원

예, 사유가 이상해서 이게 해당안건에 대해서 심의가 부결됐다는,

간 사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그 사이에 OOO가 되고 있었던 모양이
에요.

부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사전에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간 사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고하고 기간이 최대였으니까, 그렇
게 하고 그 이사를 하면서 바뀔 거라고 생각을 맨 처음에 못 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사정은 있을 수 있다고 보기는 한데, 행정낭비라
든지 또 기다리고 있던 차점분양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나중에 위원님들 다 오시면 저희들이
제도개선 형태로 안건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차점자가, 기본점수가 초과되면 차점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
래서 공모를 다시 하고 다시 심의하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리거든
요.

부위원장

어떻게, 어디 정도까지 오셨나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죠.

OOO 위원

O 위원님은 파킹 아마,

부위원장

파킹이요?

OOO 위원

그런데 000로 오시잖아요.

조금,

부위원장

파킹하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000 위원님.

간 사

모시러 왔습니다.

000 위원

아니 모시러 왔는데 오신다는 보장이 없어서, 일단 000 위원 오라고 했어요.

바로 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위원장

예, 000 위원.

000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성원이 되었으니까 시작하시죠.

000 위원

성원이 안 됐어요.

000 위원

아직 안 됐어요?

부위원장

더 오셔야 됩니다.

000 위원

그럼 화장실 좀 갔다가,

부위원장

또 떠나시면 안 됩니다.

000 위원

000위원회 거기에서 나오려고 했더니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도 성원이 안 된다고요.

000 위원

잠깐 차 한 잔 하시고 자료 보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오늘은 이렇게 간담간담하게 됐네요.
여덟 분이,

OOO 위원

출석률이 낮은 위원님들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실무진에서 그것 좀 체크를 하고, 여분을 두시면서 날짜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OOO 위원

이것 한참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부위원장

다 오케이하셨는데 이렇게 되셨네요.

간 사

시간이 좀 조정이 된 것도 있고요.

부위원장

시간이 조정돼서 그런가요?
2시에서 3시요?

OOO 위원

아니 그런데 좀 예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요.

부위원장

오셨네요.

OOO 위원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고생하셨네요, 오시느라고요.

OOO 위원

시 관계인지,

OOO 위원

터널에서 차가 막혀버리신 거죠?

000 위원

터널에서...

000 위원

너무 애쓰셨어요.

부위원장

이때 드론처럼 날아가지고 오는 비행기 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000 위원

너무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000 위원님 오시면 바로 시작.

000 위원

위원님, 일단 차 한 잔 하시면서 잠깐 한 숨 돌리세요.

부위원장

숨 좀 돌리시고요.

회의진행 할 때 저도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000 위원

이 회의가 가요?

부위원장

아니 이런 것 말고 다른,

000 위원

다른 회의에서요?

부위원장

예, 다른 데에서도요.

그래서 그분이 올 때까지 어떨 때는 한 시간 이상을 성원이 안 되니까
진행을 못해가지고, 차로 가서 불러놓고 앉혀놓고 그냥 굉장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순조롭게 된 것입니다.

한 분만 오시면 되니까요.

간 사

요즘에는 조찬회의를 많이 합니다.

부위원장

정회를 해버리고 하는데 다시 또 모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오시는 분까지요.
아홉 분 그러면 오신 거 돼서요.

간 사

안녕하십니까.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회 간사 서남권사업과장 000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열네 분 중 아홉 분이 참석하였으므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19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참가하지 못한 행정2부시장님 대신해서, 000 부위원장님께서 개회선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열네 분 위원님들 중에서 아홉 분이 참석을 하셔서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41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회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봉 3타!)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벌써 6월이 하반기도 지나갔고 곧 여름이 올 텐데, 지난번 40차 정책심의회위원회에서 뵙고 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얼굴을 뵈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시간관계상 먼저 위원들 소개하시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간사께서 오늘 심의안건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보고해 주세요.

간 사

페이지,

부위원장

첫 번째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의안건이 세 건이, 네 건이 올라와있고요.
보고안건이 네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심의안건 첫 번째로는 연구시설 면적 하향 사업계획 변경 심의의 건이 올라와있고, 둘째는 마곡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개정안, 셋째는 마곡

광장 사용신청 우선순위 중복 시에 의견 청취하는 방법이 올라왔습니다.

심의안건이 처음에는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두 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별도로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안건은 나중에 다시 보고하기로 하고, 먼저 첫 번째로 올라온 연구시설 면적 하향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심의안건 간사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제 I -1호 심의안건

연구시설면적비율 하향 사업계획 변경 심의

제 I -1호 심의안건설명

간 사

회의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연구시설 면적비율 하향 사업계획 변경심의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OO이 전체 건축연면적은 동일하지만, 연구시설면적을 감소하고 그 대신 부대시설면적을 증가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건축연면적은 OO,000㎡로 같고, 연구시설면적을 O,000를 감하고 그 대신 부대시설을 증가하는 내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면적 비율은 OO.O%에서 OO.O%로 감소비율이 O.O%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뒤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페이지를 보시면 31차 정책심의회 때 준공 전에 시설계획 변경할 때 가이드라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심사기준 파란색을 보시면, 건축연면적에는 변동이 없지만 연구면적이 감소할 경우에는 그 연구면적 감소사유, 부대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1페이지 보겠습니다.

소관부서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당초 연구시설면적이 OO%로 입주기업 중 최고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처음에 계획했을 때, 부대시설면적에 대한 배려가 조금 미비했다는 점이 있어서 수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그 당시에 OO과 경쟁했던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OO이 000점이고, OO이 000점, 이거는 OO이 됐죠.

평가점수기준이 미충족되고요.

그다음에 OO이 00.0%,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00.0% 정도의 연구면적이 되기 때문에 OO은 00%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회사가, 혹시 설명이 필요하면 회사,

제 I -1호 심의안건 심의

부위원장

밖에, 회의실 바깥에 있습니까?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기업관계자가 오셔가지고 설명을 또 하고, 위원님들 질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것에 질의를 하실 분이 질의하시고, 아니면 기업관계자가 필요하시다면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계자 들어오게 해서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OO 들어오세요.

OO에서 오셔서 대표로 경위를 설명하실 분,

(주)OO 기업관계자A

예, 제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직책, 직위를 설명을 하시고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이요.

OOO 위원

질문을 드리고 답변하는 거는,

부위원장

아니 우선 사유를 먼저 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OO 기업관계자A

신청하게 된 이유는,

부위원장

저 OO의 누구십니까?

간 사

직함,

(주)OO 기업관계자A

기술팀의 상무 0 0 0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예, 상무님.

(주)OO 기업관계자A

여기는 연구실장 0 0 0입니다.

(주)OO 기업관계자B

0 0 0이라고 합니다.

(주)OO 기업관계자A

보통 의학 쪽에는 연구활동을 하게 되면 독자적으로,

부위원장

조금 큰 소리로 해주세요.

(주)OO 기업관계자A

독자적으로만 연구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특히 빅파마, 빅글로벌 멀티네셔널 제약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라든지 OO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또 국내에 스타트업 바이오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오픈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요즘 그렇게 합동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작게는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많게는 십여 개 정도의 프로젝트 별 프로젝트가 생기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지원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행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 있고 그다음에 홍보를 또 해서 해야 되는데, 각 프로젝트마다 지원인력이 한 두 명 내지 세 명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비연구인력입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런 인력들에 대한 사무공간이, 애초에 연구면적을 너무 높게 잡는 것

도 있지만, 지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공간을 전혀 할애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단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 메인터런스 그 공간도 없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주로 관리 쪽을 보충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시설을 줄이겠다.’
그 말씀이죠, 결론은요?

(주)OO 기업관계자A

예, 연구지원인력이 아예 있을 공간이 없어서요.

부위원장

설명 끝나셨나요?

위원님들?

OOO 위원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원래 용도변경의 취지가 당초계획은 임상연구소를 대체해서 사무실로 한다는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당초에 임상연구소를 두고자 했을 때 그 필요성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주)OO 기업관계자A

예.

OOO 위원

그런데 그거를 없었을 때에 어떤 회사의 입장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OO의 제안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임상연구소기능이 필수항목 중에 하나리라고 보고 평가했을 것이라고 추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임상연구소 아예 없애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것과 필요로 하는 그 거기 일종의 미팅플레이스하고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여쭙보고 싶은데요.

임상연구소 아예 폐지, 없애는 게 어떤 뜻인지요?

사무실이 필요한 것은 알겠어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임상연구소를 폐지하는 것은 또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요?

(주)OO 기업관계자A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임상연구멤버들은 본사 사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조직은 일단 본사 사옥에 두고,

OOO 위원

‘이전하려던 것을 이전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가요?

(주)OO 기업관계자A

면적이 애매해서요.

물론 설계하면서 좀 변경이 가능한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OOO 위원

죄송한데 하나만 여쭙볼게요.

여기에서 임상연구소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거였습니까?

(주)OO 기업관계자B

임상연구실의 경우에는 사실 CRO랑 그다음에 병원을 이용해서 임상연구를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든 커넥션이 가능한 OO에 있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으로 그런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임상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트에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상이 일어나는 선생님들하고 대면미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교통적인 편리성에 의해서 OO에 있는 본사에 있는 것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OO 기업관계자A

죄송한 말씀인데 선생님은 의사분을 이야기합니다.

(주)OO 기업관계자B

의사분들과 커넥션이 더 많은 부분이라 그런 미팅이 많은 거고, 마곡연구소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 연구소 내에서의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연구개발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연구지원에 대한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OOO 위원

그럼 제가 궁금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주식회사 OO 같은 경우의 제안인 경우 서울시가 OO 이 로케이션에 엑셉트를 하는 것 취지 중에 하나는 'OO만이 아니라 그 마곡클러스터에 들어서는 다양한 바이오 쪽의 관련된 기업들 간에 시너지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의 매개역할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미팅플레이션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런 공동의 임상연구소와 테크놀로지가 되는 것도 충분히 기대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아쉬워서, 실망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OO 기업관계자B

그리고 임상연구실의 연구소, 아까 임상과학실하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임상과학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의사선생님, MD 출신의 연구원분들이 그런 디자인을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아마 마곡에 같이 일을 하실 것 같고요.

임상연구실, 지금 말씀하셨던 직접 선생님들, 의사선생님들을 만나서... 하고 CRO 매니지먼트 하는 경우에는 본사뿐만 아니라 이런 네트워킹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본사에 위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곡에 안 오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부분으로, 오픈스페이스 형태로 아마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OO 기업관계자A

임상연구 쪽에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닙니다.

결정 난 게 아니어서,

OOO 위원

그래서 여쭙본 거예요.

(주)OO 기업관계자A

다른 층으로 할애를 하더라도 꼭 거기에다가,

OOO 위원

'기능을 살려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주)OO 기업관계자A

꼭 본사에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OOO 위원

어차피 임상연구소에서 하는 역할이 주로 OO에서 개발된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에, 그거를 시중에 있는 병원에 있는 의사분들한테 쥐가지고 하게끔 되잖습니까.

그래서 페이스 1, 2, 3로 갈 텐데, 지금 현재 OO에서 여기에다가 임상 연구소 한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페이퍼워크 쪽이죠, 여기에서는요?

(주)OO 기업관계자B

페이퍼워크도 있습니다.

OOO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페이퍼워크이고,

(주)OO 기업관계자B

예.

OOO 위원

그다음에 바깥에 실험하는 거는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OO 기업관계자B

예, 맞습니다.

OOO 위원

그럼 결국은 말은 임상연구소이지만, 결국은 사무실공간하고 다를 게 크게 없잖아요.

원래 당초 그 취지가요.

(주)OO 기업관계자A

그런데 인력이 연구인력이 해야 돼서요.

OOO 위원

연구인력은 맞는데 그런데 말, 명칭 자체가 임상연구소라고 해가지고 제3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거기에서 이렇게 벤치워킹을 많이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느낌이 들지만, 실질적인 하는 일 자체는 페이퍼워크 위주가 더 많지 않겠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사무실을 그거를 바꿔도 큰 기능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주)OO 기업관계자A

그렇게 보면,

OOO 위원

R&D와 인력은 조금 다르죠, 매니지먼트.

부위원장

예.

OOO 위원

사무공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관리라든지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주)OO 기업관계자B

예, 맞습니다.

OOO 위원

그런데 처음 계획에 그거를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주)OO 기업관계자A

그게 사실은 더,

OOO 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세요.

(주)OO 기업관계자A

그게, 저희가 사무공간에 지원조직을 편성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거를 입안을 하는 사람이 그거를 놓친 거죠.

전혀 비율이,

OOO 위원

그래서 OO에서 OO명 활용을 하겠다?

OO명에서OO명.

(주)OO 기업관계자A

예, 한 OO에서 OO명 정도.

(주)OO 기업관계자B

일반적으로 오픈이노베이션을 기지로 해서 공동연구를 10년 전부터 활발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하다 보면 상대방 파트너사와의 계약이라든지 특허 검증, 자문, 그리고 공동연구를 했을 때 사용하는 기기들에 관련되어 있는 엔지니어,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한 분들이 저희랑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연구소당 보통 00명당 0.0에서 0.0의 연구지원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000 위원

그래서 계획에서 그게 없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서, 누락됐다고 그러니까요.

(주)00 기업관계자A

식당이나,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식당, 로비, 전시, 제품의 전시 이런 부분을 할애 안 할 수는 없고, 물론 아까 오픈이노베이션 얘기도 있었지만, 할애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무실 지원인력에 대한 공간할애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부위원장

다른 분,

000 위원

질문 마쳐요.

우리가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대충은 들으신 것 같네요.

다른 분 없으시죠?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주)00 기업관계자A

감사합니다.

(기업관계자 퇴장.)

000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말씀하실 것, 예.

OOO 위원

제가 질문 드리던 취지는 사실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보통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공모 할 때, 당초 취지랑 달라지는 것 중에 가장 불편하거나 저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핵심코어사업 정도가 변경되는 게 불편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중에 보면, 제 업무도 이런 유사한 업무를 다른 곳에서 하다 보니까, 연구소나 이런 기능이 사실 코어 기능이 보여졌는데 이거를 다른 수요에 의해서 대체한다고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기능을 어딘가 살리는 방안으로 하되, 필요한 오피스공간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부분적으로 어떤 조화를 위해서도 아예 이거를 뺀다고 하면, 초기에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큰 취지에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문제제기처럼 여쭙본 것입니다.

부위원장

취지는 다, 예.

또 다른 분들?

OOO 위원

심의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예.

OOO 위원

일단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 건은 불허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내세우고요.

그 이유가 일단은 마곡단지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로, 다 연구시설 줄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자꾸 열어주게 되면,

부위원장

선례가 되고, 선례가요.

OOO 위원

예, 전에도 이 건 이런 비슷한 건이 한 건이 있었는데, 선례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불허를 해야 된

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만, OO만 보더라도 보면 관리조직이OO명에서 OO명인데, 과연 이 인원이 관리조직에 대해서 O층 행정실 있고 기타 다른 데는 연구소, 연구시설들이 있는데요.

이 한 개 층에서 OO명조차도 그거를 소화할 못 할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상은 좀 다른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서상에서 볼 때는 이게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OOO 위원

저는 다른 생각인데요.

부위원장

OOO 위원님.

OOO 위원

‘일단 여기에서 임상연구소라고 하는 명칭 자체를 너무 크게, 당초 계획에 너무 크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그 제품을 만든 다음에 대학병원에다가 임상연구를 시키고, 안에서 검토하고 하는 그런 그 위주로다가 대부분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인력을 갖다가 이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임상연구를 하기 위한 지원인력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 보기 때문에, 명칭을 다른 걸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선 첫째는요.

그리고 어쨌든 그 아래층에, O층에 행정실이 있지만 행정실은 그냥 일반행정에 대한 이야기이고, 여기 O층에 대해서는 임상연구에 관계되는 지원인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로다가 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한 쪽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한쪽은 불허하시자고 하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럼 다른 분들의,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두 건에 대해서 먼저 그럼 가부를 한번 결정하는 게 어떤가 싶을까 합니다.

이거를 불허를 해야 될 거냐, 허가를 해야 될거냐, 받아들일 거냐.

000 위원

조건부나 이게 파설로요.

부위원장

파설로요?

000 위원

완전히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불허를 하게 된다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조건하에서 뭘 받아들인다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000 위원

임상연구소를 전면폐지가 아니라, 0층에 임상연구소 플러스 이렇게 해서 지원연구공간으로 조정한다든지.

000 위원

임상연구 지원인력실이라든지 지원시설이라든가, 하여튼 명칭은 뭐라고 우리가 정하기 그렇지만요.

부위원장

임상연구소는 이게 변경돼서 아예 없어지는 걸로 여기 되어 있거든요.

000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 기능은 살아있는,

부위원장

그러시면,

000 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아예 없었을 때는 또 다른,

부위원장

그럼 임상연구소에 있는 이런 인력들은 어디로 재배치가 되거나, 어디에서 무슨 기능을 담당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해서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 어디로, 이 연구인력이 어디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임상인력들이요?

000 위원

조금 절충을 하자면,

부위원장

절충을 하도록 그렇게,

OOO 위원

임상연구소는 살리되, 그 아까 업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관련
된 사무인력이 이 공간에서 쓸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그 방법도 모색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연구소는 그대로 놔두고요.

OOO 위원

O층을 새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재배치를 하든.

부위원장

재배치, 연구인력을, 임상연구인력을요?

OOO 위원

없어요?

부위원장

이게,

OOO 위원

위원님 계셔가지고,

부위원장

예, 위원님 전문적이시니까 만약에 아까 페이퍼워크를 하는 쪽이라고
아까,

OOO 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부위원장

페이퍼워크를 한다고 아까 그랬습니다.

OOO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의사들이, 의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거기에
서 나온 자료를 회사의 안에서 또 MD가 있을 거라고요.

의사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서 결정을 하고서 방향
을 어떤 쪽으로 갈 거냐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특히
검색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갖다 보관을 한다든가 하는 그

런 인력이 같은 층에 있으면서, 시너지이펙트를 올리겠다는 그런 얘기 갖거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OOO 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부위원장

그런 뜻으로 아까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러면 이름만 바꾸는 꼴이 되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OOO 위원

‘이름 자체를 좀 바꿔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위원장

임상연구소라고 하는 이름을 사무실로 그냥 쓴다는, 그것만 바꾼 거거든요.

OOO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구지원팀이라고 하는 것이 임상, 제가 잇몸수술 저기 해서 조금 말이 그런데, 임상연구하고 관련된 연구지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하면,

OOO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그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다고 하면, 그거를 서로 연결시켜서 워딩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서 하면,

OOO 위원

글쎄,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OOO 위원

한 가지 궁금해 진 것은 뭐냐 하면, 그 업체가 인정했던 거는 뭐냐 하면 R&D인력이 아니고 매니징인력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OOO 위원

글쎄, 그거는 맞아요.

000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의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매니징인력도 필요하다면 R&D인력하고 같이 쓰면 안 되겠냐 이거죠.

위원님도 같은 뜻으로 하신 건데,

000 위원

예.

000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부위원장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그 오피스 변경이 좋은,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고 또 처음에 이거를 제안할 때는 분명하게 '우리는 R&D 관련된 포커싱한다.'라고 어필했던 것 같은데,

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한 건데요.

000 위원

...한 거는 조금,

000 위원

그런데 그 R&D연구소 이런 이분들은 지원인력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스페이스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변경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 그러니까 연구지원 그런 실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부위원장

이름을 바꿔서 사무실을,

000 위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이 연구소와 관련된 지원인력이 들어 오게끔 하는 제한을 준다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부위원장

사무실을 이렇게 사무실이라고 쓰지 말고, 임상연구지원실 이렇게 해서 바꾸면,

OOO 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든 다른 걸로 워딩을 바꾸든 그런 식으로,

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워딩을 바꾸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OOO 위원

저는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게 그 준공 전 입주기업이 시설계획을 변경이 가능하도록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변경을 이 기업의 사정이라든지 전후 사정에 따라서,

부위원장

바꿀 수 있나요?

OOO 위원

기업이 얼마든지 그거는 바꿀 수 있는 것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사업계획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건데요.

그것이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구시설면적의 비율이 무슨 과도하게 50% 이하로 다운이 된다면 이런 거는 우리가 심사를 할 권한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러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사무실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타당성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승인을 하는 것 같으면 승인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지,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이 ‘뒤편 써라, 뒤편 써라.’로 이렇게까지 간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OOO 위원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여기 보면 2페이지에 공통사항에 변경 후 연구시설면적 비율 최소충족기준이 대기업은 50% 이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부위원장

여기는 충족이 됩니다.

OOO 위원

예, 충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위원장

‘이거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결정을 하는,

OOO 위원

예, 그거 그 차이인데요.

OOO 위원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 드리면요,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시면 사실 그때 당시에 OO이 마곡에 굉장히 들어오고 싶었다는 느낌을 가져요.

왜냐하면 여태 입주하겠다고 했던 기업 중에 최고로 OO%나 연구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의견은 어차피 그때 당시에 경쟁했던 기업, 만약에 이 연구시설 너무 많이 제공해서 OO이 됐다면, 그때 떨어졌던 기업은 어떤가 봤더니 변경을 해줘도 그 기업보다도 훨씬 연구면적실이 높다. 그리고 지금 있는 기준에도 위배됨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마곡에 새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1층부터 쪽 보시면 사무실 운영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너무 과욕,

부위원장

맞습니다.

OOO 위원

연구에 좀 포인트를 두고 하다 보니까 아마 과욕이 일어난 사항 같아서, ‘그 안에 연구시설을 뭘 넣으라, 마라.’ 그것까지는 사실 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땅을 분양하는 콘셉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무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또 기존에 연구시설 제한을 두고 있는 면적 기준이나 이런 거에 전혀 위배됨이 없고,

부위원장

맞으면, 예.

000 위원

또 입주계약 당시 경쟁기업하고의, 어떤 경쟁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됐거나 이런 사항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변경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게 사실 실무부서 검토의견입니다.

000 위원님은 어쨌든 여기에 바이오클러스터로 제공하려면 당초 했던 대로 임상연구가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 계속,

부위원장

반대쪽으로 기우신 것처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000 위원

동의합니다.

000 위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I -1호 심의안건결론

부위원장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OO에서 요청한 이 연구시설 면적비율 하향된 것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가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대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가를 먼저,

000 위원

해주세요.

부위원장

다른 반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결됨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 봉 3타!)

제 I -2호 심의안건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① 입주·분양계약 포기 시 차순위자 선정 규정 신설

②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 산정 규정 신설

부위원장

다음은 두 번째 심의안건,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에 대한 보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 I -2호① 심의안건설명

간 사

7페이지 되겠습니다.

입주·분양계약 포기 시 차순위자 선정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보고안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보고안건하고 연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23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난 4월29일 날 40차 정책심의회에서 주식회사 OOOOO를 협의대상자가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선정이 됐지만, 이 회사가 그 사이에 OOO 같은 기업사정이 있어서 용지에 대한 계약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다시 7페이지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기본계획에 이런 중간에 철회를 하게 되면 다시 공고를 해야 되고 다시 또 선정을 해야 되는 절차가 석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행정낭비가 되기도 하고, 다음에 들어온 기업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를 보시면, 관리기본계획 개정사유를 보시면 이와 같이 입주계약 대상자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에 따라서 동일필지를 재분양 공고를 해야 되는데, 분양계약 체결 전에 협의대상자가 입주를 포기할 경우에는 재공고라든지 재심사 등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밑에 개정내용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현행에는 없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부분을 보시면 ‘선정된 입주자가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급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협의대상자 선정기준을 만족한 차순위자를 입주계약 협의대상자로 한다.’ 이런 내용을 추

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I -2호① 심의안전심의

부위원장

신설하는 거죠?

간 사

예.

부위원장

조항을 신설하는 거죠.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OOO 위원

여기에 부대조건에 협의대상자 선정기준이 뭐예요?

간 사

최저점수, 1,000점 만점에 600점인가요?
600점.

OOO 위원

그게 협의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간 사

예.

OOO 위원

600점 이상?

간 사

예.
600점이 안 되면 차점자라고 하더라도,

OOO 위원

아니, 협의대상자 선정기준이란 말이 제가 어디하고 연결되는지 물어보
는 거예요.

부위원장

그때 2위가 몇 점 차가 났었는지,

간 사

600점 넘었죠.

넘었는데,

부위원장

2위도 600점이 넘은,

간 사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OOO 위원

그때 당시에는 2위가 사실 더 공공기여도 그렇고 좋았어요.

간 사

좋았어요.

OOO 위원

총점에서 큰 차이 없이 1위가 됐는데, 이런 규정이 없어서 임의로 2위를 입주계약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괜찮을,

부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계속 1위와 2위가 있을 때, 1위가 있으면 무조건 차점자에게,

간 사

600점을 초과한,

부위원장

넘었을 경우로 한해서요.

OOO 위원

제 의견은 이 조항을 ‘입주계약 협의대상자로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하고,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00점 이하라든가 그거를 좀 열어놓고서, 무조건 차점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자격이 현저하게 낮거나, 아니면 600점은 넘지만 다른 조건이 안 맞을 때는 재공고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 수 있다.’로 변경해서요.

간 사

‘할 수 있다.’로,

OOO 위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부위원장

무조건 2위에게 주는 것보다.

OOO 위원

예.

부위원장

그럼 ‘입주계약 협의대상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수정을 할까요?
아니면 거기에다가 더 조건을 또 집어넣을까요?

OOO 위원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부위원장

가능성만 열어두고, ‘만족한 차순위자를 입주계약 협의대상자로 할 수 있다.’

OOO 위원

어차피 위원회에서 코멘트를 다시 하는 건데요.

제 I -2호① 심의안건결론

부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면 마곡산업, 없으시죠?

OOO 위원

예.

부위원장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의 신설안에 있어서 맨 마지막 부분 ‘차순위자를 입주계약 협의대상자로 할 수 있다.’ 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의사 봉 3타!)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 신설규정.

제 I -2호② 심의안건설명

간 사

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 산정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사유를 보시면, 현재 지식산업센터는 처음으로 용지를 분양하게 되고요.

지금까지는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일반용지를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기본계획상에 건축연면적은 건축법상에 있는 연면적 산정규정이 아니라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가 됨에 따라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식산업센터는 자기가 직접 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 혹은 임대를 하기 때문에, 분양면적과 분양가를 책정할 때 전용면적뿐만 아니라 공용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관리기본계획상 건축연면적 규정은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진행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페이지 개정안 박스 하단을 보시면, 현재 관리기본계획상에 연면적 산정방식은 있었습니다.

건축연면적에는 주차장 및 기계실 면적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고, 용도별 시설면적을 공용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괄호로 해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건축연면적 전체입니다.

건축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개별기업이 했을 때는, 주차장과 기계실면적을 제외해서 연구시설면적을 산정하는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포함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바꾸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는 나중에 분양할 때는 공용 부분도 다 포함해서 실제로 분양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는 예외로 이런 형태를 부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I -2호② 심의안건심의

부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OOO 위원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현재 건축연면적을 개선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따른다는 건가요?

간 사

예.

OOO 위원

괄호를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게 뭘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왜냐하면 산정함에 바로 괄호를 붙여놔가지고, 앞에 것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하여간 지금 현재 건축연면적은,

부위원장

일반적인 경우.

OOO 위원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분양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니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연면적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뜻이네요?

간 사

예.

제 I -2호② 심의안건결론

부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면 그대로, 토의 원안대로 개정안에 대해서 그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봉 3타!)

다음 세 번째, 마곡광장 사용신청 우선순위 중복 시에 의견청취 방법에 대한 간사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 I -3호 심의안건

마곡광장 사용신청 우선순위 중복 시 의견청취 방법

제 I -3호 심의안건설명

간 사

4월29일 날 40차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보고했는데요.

그 이후에 5월 달에 조례규칙 심의 마치고, 6월 달에 위원님도 계시지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보시면 밑에 10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제6조에 파란글자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일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이 경우 사용목적이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곡산업단지 조례 제14조에 따른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허가할 수 있다.’라고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책심의회 의견을 들어’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심의위원회가 소집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운영세칙도 있지만, 1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신청일과 사용목적이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고자 안건 올렸습니다.

1안은 ‘조례 그대로 정책심의 열어서 그러면 하자.’ 이런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안은 ‘정책심의 소위원회가 있으니까 기왕에 있는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든지 서면심사를 하든지 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10월 중에 공포돼서 시행될 예정이고요.

현재는 마곡광장 사용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MICE가 들어서고 해야, 지금은 이동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몇 년쯤 지나야만 활성화될 것 같은데, 미리 대비해서 조례를 만든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중복될, 목적이라든지 날짜가 중복될 확률은 많지는 않지만,

OOO 위원

거의 없을 겁니다.

간 사

예, 없는데 그래도 미리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OOO 위원

왜냐하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사용허가를 받는 콘셉트거든요.
그런데 같은, 거의 같은 날 사용하겠다고 거의 같은 시점에 같은 목적
으로 신청하는 이 경우는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낮는데,

부위원장

거의 없을 것 같아요.

OOO 위원

낮은데, 어쨌든 저희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했기 때
문에, ‘그 의견 듣는 방법을 나중에 근무할 분들을 위해서 미리 정해놓
고 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제 I -3호 심의안건심의

부위원장

1안과 2안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네요?

OOO 위원

예.

저희 건의는,

부위원장

그렇죠?

1안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OOO 위원

예, 저희 건의는,

OOO 위원

그런데 심의 전에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운영하죠?

똑같이 소위원회에서 하나요?

간 사

그거는 광장 그 심의위원회가,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OOO 위원

따로 있죠.

간 사

광장하고 세 개는 따로 있습니다.

청계천광장, 세 가지 있고요.

000 위원

위낙에 규모가 커서요.

000 위원

청계천, 광화문광장, 시청광장 세 군데는 광장심의위원회에서 따로.

간 사

저희들 광장은 그 위원회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1안하고 2안 중에서 우선 먼저 간사 설명한 거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주시고요.

의견이 없으시면 1안과 2안 중에서 선택, 가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별로 발생하지 않을 일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 1안으로 하면 우리가 불법으로 더,

부위원장

우리가,

000 위원

우리가 불법으로 할 수, 그렇죠?

5일 전에 신청했는데 언제 정책심의, 만약에 극단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000 위원

처리하기가 어려운,

간 사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특정 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시간을 정해서 60일 전부터 며칠까지 있으면 9시 땡 하면 동시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아주 드물게,

000 위원

집행부의 의견은 2안을 원래 가지고 온 거잖아요, 2안으로 해달라고요.

부위원장

2안으로 해달라는,

000 위원

000 과장 살아 있는 동안에 안 생겨요.

2안으로 가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부위원장

현실적인 것도 2안이 제일.

000 위원

그렇죠.

제 I -3호 심의안건결론

부위원장

그럼 마곡광장 사용신청 우선순위 중복할 때 의견청취 방법은 2안으로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 봉 3타!)

다음 심의안건, 두 번째 심의안건 마곡 R&D센터 건립에 관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에 대한 안건입니다.

간사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관리단장(마곡산업단지)

본 건은,

부위원장

죄송합니다.

마곡산업관리단장님 000 단장님께서.

제 II -2호 심의안건

마곡 R&D센터 건립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안)」 심의

제 II -2호 심의안건설명

관리(마곡산업단지)

안녕하십니까.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 000입니다.

심의 안건 두 번째로 마곡,

부위원장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단장(마곡산업단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29일 날 제40차 정책심의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일단 보고 드린 바가 있는 그 후속 보고안건으로, 금일 보고하는 것은 마곡 R&D센터 건립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심의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 R&D센터 건립 민간사업자 공모 준비중인 관계로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제Ⅱ-1호 안건심의결론

부위원장

그럼 결론을 내야 될 것 같네요.

많은 토론과 질의와 있었습시다마는, 결론은 이게 단장님 하루, 이틀에 만드신 것도 아니고, 평가표도요.

그리고 많이 또 회의를 거쳐서, 자문위원도 다 거치고 또 실무진에서 거쳤기 때문에 000님 걱정하셨던 이런 문제.

000 위원

옆에 상업시설 이용하면 된다니까요.

부위원장

예, 밥 먹는 것은 옆에 가서 이용하시고요.

000 위원

000님, 옆에도 살려야 되잖아요.

000 위원

옆집도 텅텅 비었어요.

000 위원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그래서 이 설명하신 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추진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완 같은 것 있으면 실무진에서 다시 더 세부적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관리단장(마곡산업단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이 안건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 봉 3타!)

그다음에 보고안건, 시간은 거의 다 됐습시다마는, 보고를 간단히, 아직 못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간략하게.

간 사

세 분이 오시기 전에 보고안건을 간단히 설명했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첫 번째 보고안건은 제가 심의안건을 하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예, 됐고요.

간 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서울식물원 서측 지원시설 명소화 관련해서 용지변경 건입니다.

<명소화 사업 진행중인 관계로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30페이지, MICE복합단지 사업자 제공모계획.

<MICE 복합단지 사업자 제공모 계획 진행중인 관계로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이상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는 지난 5월 달에 M-밸리 포럼이 열렸습니다.

열러가지고 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간사님을 통해서 보고안건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보고안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봉 3타!)

그럼 정책, 41차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보고안건을 모두 다 듣고 다 결정을 하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 달 시작이 되겠는데 수고들 많이 하였고, 다음 42차 정책심의위원회 때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폐 회 18시05분.(2019년 제41차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